금융계약의 경개와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법률관계*

-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금융계약을 중심으로 -

최 아 름**

<차례>

Ⅰ. 들어가면서
Ⅱ. 중장기성 수출보험과 금융계약
Ⅲ. 경개를 통한 금융채권자의 변경
Ⅳ. 중장기성 수출보험에서 금융계약의 경개 인정 가능성
Ⅴ. 마무리

주제어 : 프로젝트 파이낸스, 경개,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금융계약, 수출금융

<국문초록> 중장기수출보험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목적은 금융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인 은행은 국제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융계약에서는 양도의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개를 활용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금융계약의 경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금융계약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법률효과에도 변동이 발생한다. 금융계약의 경개로 구 계약과 신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보험의 목적의 상실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만일 보험자가 이 금융계약의 경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한다면, 금융계약의 경개로 말미암아 담보계약의 상실 등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실효적인 행사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만일 금융계약의 경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 금융시장에서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상품성이 저해되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법적효과가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상품성에만 치중하여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믿었는데,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지 못하여 자신이

* 본 논문은 한국보험법학회 제72회 보험판례연구회에서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하여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본 논문을 완성하는데 유익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논문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리,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8.11.27), 심사개시일(2018.12.16), 게재확정일(2018.12.26)

www.kci.go.kr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알게 된다면 보험계약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보험자는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상업적인 상품성 그리고 안정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인 금융계약의 경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먼저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가 경개를 통하여 금융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보험자가 인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충분히 실효적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금융계약의 경개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 들어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PF)[1] 방식의 금융조달기법은 석유·화학, 발전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병원, 공항, 현수교, 고속도로 등 각종 산업분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여 금융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2]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대출, 회사채발행, 리스,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주된 금융제공의 수단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다.[3] 우리의 법상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와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을 통상 "금융계약" 또는 "대출계약"이라 부른다.

금융계약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차주[4]에게 금전을 대여하여야 하고, 차주는 차용한 금전을 상환기일에 대주에게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금융기관은 차주가 최종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날까지 그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으나, 국제 경제상화의 변화, 금융기관 내부의 국별 위험 관리 정책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필요가 있

1)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사용하는 예에 따라 그 뜻이 다양하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조달 또는 금융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 자산을 담보로 하되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은 제한되면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에게 제공되는 금융을 의미한다.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한다(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2016, 4면).

2) 반기로, 위의 책, 23면.

3) 한민, "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51-52면.

4) 통상 특수목적회사가 차주가 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금융이 조달된 것이 아니라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CF) 방식으로 금융이 조달된 경우라면 차주는 일반 회사(또는 공공의 기관)가 된다.

www.kci.go.kr

을 수 있다. 금융계약은 영국법 또는 뉴욕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금융채권을 양도(transfer 또는 assignment)하고자 할 때에는 영국법 또는 뉴욕법의 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그 권리를 이전한다. 다만, 미국법과 달리 영국법 상 채권양도는 의무의 이전을 수반할 수 없으므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함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경개(novation)를 활용한다.

경개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금융계약에 대하여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5]의 보험을 통한 금융지원이 있었다면 금융관계 뿐만 아니라 보험관계에서도 그 법률효과의 변동이 발생한다. 만일 이 금융계약으로 인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각종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금융계약의 경개로 말미암아 담보계약이 절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효적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의 수출신용기관 중 보험을 지원하는 곳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기금과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익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보험자 대위권 행사는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계약의 경개가 중장기성 수출보험과 그 보험자 대위권에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Ⅱ. 중장기성 수출보험과 금융계약

1.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내용

(1) 개념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통상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6]하는 수출거래 또는 이와

5) 우리나라는 한국무역보험공사(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와 한국수출입은행(Korea Export and Import Bank, K-EXIM)의 두개의 수출신용기관이 존재한다. K-SURE는 보험으로, K-EXIM은 직접대출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한 해외사업에 대하여 금융을 지원한다(한국무역보험공사, 『2016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한국무역보험공사, 2016, 119면).

6)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단기성 수출보험"이라 한다(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제도안내 02』, 한국무역보험공사, 2016, 5면).

www.kci.go.kr

관련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7]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수출기반보험이 중장기성 수출보험에 속한다. 이 중 금융계약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8]이 있다. 이 중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이 2017년도 K-SURE의 인수실적 중 2위[9]를 차지한 점과,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의 금융계약과 보험계약의 구조 및 보험약관의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의 논의대상으로 한정지으며, 편의상 이 두 보험을 중장기성 수출보험이라 부른다.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은 자본재상품 등 중장기 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수입국 은행 앞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대출)을 제공하는 구매자신용 방식에 대하여 차주에 의한 대출 원리금 회수불능을 담보하는 것이다.[10] 예를 들어, 국내의 A기업이 해외에 소재한 B기업에게 기자재를 수출하였다고 하자. 이 때 B기업이 A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수출계약대금을 자기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고액의 수출계약인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수출계약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은 B기업이 은행과 수출계약대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차입하는 것에 대하여, B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을 담보한다. 이를 통하여 A기업은 수출활로를 확대할 수 있고, B기업은 장기 및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은행은 차주의 원리금 미상환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7) 한국무역보험공사, 위의 책, 5면.

8)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은 금융계약의 당사자가 국내기업으로, 국내기업이 해외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금융기관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을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이다('18.11.20일 방문,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insur/over_invins03.do).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은 금융계약의 당사자가 국내기업으로, 금융기관과 금전을 차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여신거래약정'이 주로 사용된다.

9) 2018년 8월 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과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실적은 각각 3조 4,147억원, 4,024억원을 달성하였다(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통계", 「무역보험」 제207권, 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81면).

10) 2018.11.20일 방문,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insur/buyer_credit01.do.

www.kci.go.kr

<그림 1>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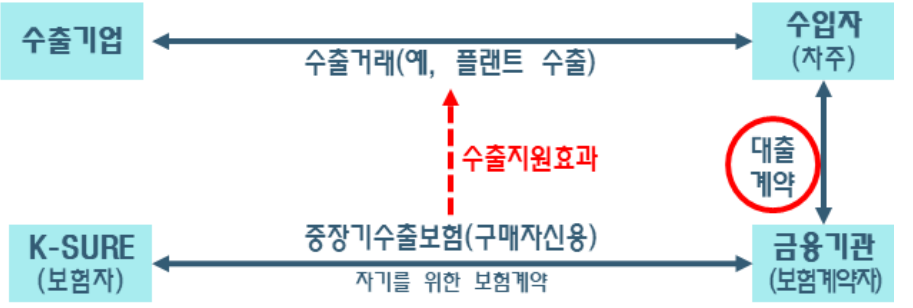

해외사업금융보험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12] 인도네시아 Hasang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LG상사가 인도네시아의 특수목적회사에 95%의 지분을 투자 및 사업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특수목적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데, 이 특수목적회사가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이 해외사업금융보험의 구조이다.[13]

해외사업금융보험은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과 그 보험계약의 구조가 유사하나, 금융계약의 체결배경이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수입자 간에 체결된 수출계약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법인의 지분취득 등 해외사업에 기인한다는 점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14]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1) 최아름, "수출신용보험 청구권 양도와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능성에 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302면.

12) 2018.11.20일 방문,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insur/buyer_credit01.do.

13) 한국무역보험공사, "무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사업에 U$1.41억 수출금융 지원 추경 예산 활용… 신흥시장 해외프로젝트 진출 돕는다", 보도자료, 2016.11.8자.

14) 그 외 차이점으로는 OECD에서 제정한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이하 "OECD Arrangement")의 적용 여부가 있다.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의 금융계약은 특정 수출계약에 기초 한다는 점에서 OECD Arrangement의 엄격한 적용을 받으나, 해외사업금융보험은 일부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OECD Arrangement는 각 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과당경쟁하여 자국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가능 대출원금, 보험료율, 금융계약의 최대 상환기간 등 중요한 금융조건을 규제하고 있어, 그 엄격한 적용여부가 금융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의 차이를 가

www.kci.go.kr

<그림 2> 해외사업금융보험 구조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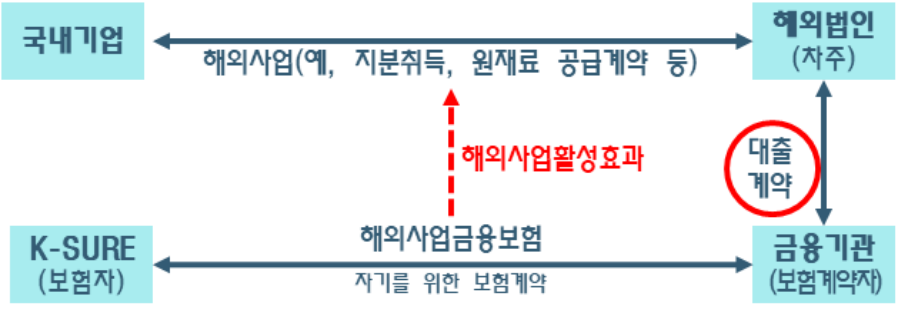

(2) 법적성질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공보험, 손해보험, 예정보험, 기업보험의 성질을 갖는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수의 법칙'이 활용된다. 그러나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보다는 국가 간 공정한 수출경쟁을 위하여 OECD 제정한 OECD Arrangement에 따라 위험을 분류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대외거래에 대한 지원 필요성[16]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는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공익적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이 점을 토대로 보았을 때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공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17]

둘째,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대출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자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실손보상적 성질이라 하며 이는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본질적인 원칙이다.[18]

져온다(한국무역보험공사, 앞의 책(각주 6), 23면).

15) 최아름, 앞의 논문, 302면.

16)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23면.

17) 이기수 · 최병규 · 김인현, 『보험 · 해상법』, 박영사, 2015, 9면;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공보험이지만 강제보험은 아니며, 그 계약관계의 본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은 사보험 내지 영리보험으로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출기업이나 해외투자 기업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17면).

www.kci.go.kr

셋째,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예정보험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①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보험의 청약 시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확정되어 있으나 그 계약의 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대출계약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협상하는 데까지 장기간이 소요[19]되기 때문이다. ② 중장기성 수출보험과 대출계약이 전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가액은 계약의 체결 이후에 특정된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이 보상하는 원금은 대출계약에서 정해질 것인데, 차주가 대출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로 차입하는 만큼이 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주가 금액의 인출을 완료하여야 최대로 보상이 가능한 보험가액이 정해지게 된다. ③ 변동금리로 인하여 차주가 상환하여야 할 이자는 반기마다 새로이 결정된다.[20] 이자율의 변동 폭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액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험사고 시 까지는 보험가액이 확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기업보험이다.[21]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계약 당사자는 금융기관이다. K-SURE의 보험계약 상대방이 일반 가계보험에서의 소비자가 아닌 상법에서의 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기업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규정이 상법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기업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대등한 계약 체결 상 경제적 교섭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보험자와 대등하기 때문에, 가계보험에서와는 달라 법이 후견적 입장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할 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상법 제663조 단서 참조).[22]

---

18) 박세민, 위의 책, 395-396면; 정찬형, 『상법강의 하』, 박영사, 2017, 528면; 이기수 · 최병규 · 김인현, 앞의 책, 173면;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28-29면; 김은경, 앞의 책, 335면.

19) 싱가포르 Jurong Aromatics(석유화학설비) 프로젝트는 2007년에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금융계약의 체결(2011년 4월)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원준연, "중장기수출금융 지원 사례 - 싱가포르 Jurong Aromatics 프로젝트 -", 「무역보험」 171호, 한국무역보험공사, 2012, 39면), 터키 Tufanbeyli 화력발전 프로젝트 또한 금융조달에 4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김수환, "터키 최초 민간주도의 갈탄화력발전소", 「무역보험」 174호, 한국무역보험공사, 2012, 34면).

20)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반기마다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 때 이자도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기마다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때, 차주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 이자율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변동금리 부 대출에서는 이자계산일을 대출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여 다음 상환 기일까지 적용할 그 이자율을 계산한다.

2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www.kci.go.kr

(3)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재화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신체'를 뜻한다. 보험자는 이러한 객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거나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23]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손해보험이므로,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재화'가 된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재화가 무엇인지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구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자본재를 수출하거나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 수입자 또는 피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손실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재화는 넓게는 금융계약, 좁게는 '금전채권'(이하, 금융채권)이 된다.

2. 보험의 목적으로서의 금융계약

(1) 금융계약의 의의

금융계약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 주로 사용된다. 금융계약(Financial Documents)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기본으로 하여, 주식, 보험, 파생상품, 할부금융 등 금융과 관련된 계약 일체로 파악된다. 특히 금융계약은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는데, 금융계약서가 하나의 계약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계약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인 '금융계약'은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과 차주가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 Facility Agreement)'을 의미한다.

22)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앞의 책, 13면; 정찬형, 앞의 책, 530면;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7, 228면;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23) 정찬형, 앞의 책, 577면; 김은경, 앞의 책, 112면; 박세민, 앞의 책, 124면.

www.kci.go.kr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의 계약서가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어, 한 개의 계약서만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으로서의 금융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금융과 관련된 계약의 일체로서의 금융계약을 필요에 따라 함께 설명한다.[24]

(2) 당사자

금융계약서의 기본 당사자는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차주와, 금융기관 대주로 구성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재무부 또는 사업주(Sponsor)가 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계약서 상 당사자로 존재한다.

차주와 대주 이외의 관계자로 대주의 대리인(Agent)이 존재한다. 대주의 대리인을 대리은행이라 한다. 대주는 수출신용기관과의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은행, 계좌만을 관리하는 대리은행, 역내 담보만 관리하는 대리은행, 역외 담보를 관리하는 대리은행 등을 지정하여 복잡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분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구조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에서의 금융계약(Financial Documents)은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될 금융구조[25], 금융조건[26], 차주·사업주·대주단의 의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사용 순서(Waterfall) 등을 규정하는 계약들로 구성된다. 금융계약(Financial Documents)은 여러 계약서가 다발로 묶여있는 것으로, 개별 계약서 간에는 공통되는 내용이 존재할 수 있고, 계약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

24) 본 챕터에서 금융과 관련된 계약서 총체로서의 금융계약(Financial Documents)과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인 금융계약(Facility Agreement)을 표현할 때에는 영문을 병기하여 그 구분을 용이토록 하였다.

25) 프로젝트가 가진 위험요소, 예를 들어 생산물 구매계약의 안정성, 건설 중의 위험, 재무가정 속에서 상환 가능한 원리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채와 자본 비율(Debt to Equity Ratio)을 조정한다든지, 건설 중 위험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를 받는다든지, 상환 원리금 부족분에 대하여 적립금을 설정(Debt Service Reserve Account)한다든지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인성,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범서북스, 2014, 141면 이하" 참조.

26) 이자율,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www.kci.go.kr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계약서 간 공통되는 금융조건과 계약서 간 적용순위 등을 공통금융조건계약에 기술하고, 개별 대주와 프로젝트 회사 간의 개별 대출계약[27], 담보계약, 대주 간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규정하는 계약 등이 그 뒤를 따른다.[28][29]

<그림 3> 금융계약 구조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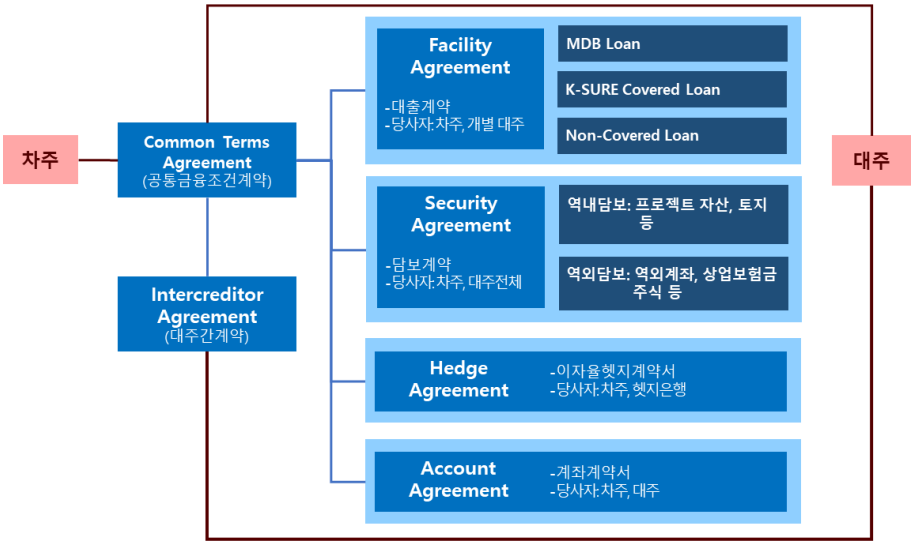

1) 공통금융조건계약 (Common Terms Agreement)

거액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방법으로 대출을 일으키고자 할 때는 단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아닌 여러 금융기관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30] 신디케이트 론에 참여하는 대주들의 특성에 따라 대출에 대하여 가지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 입장이 개별 대출계

27) 이 대출계약서가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이다.
28) 김채호,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24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 32면.
29) 이 외에 변동되는 이자율을 고정시키기 위한 Hedge Agreement도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30) Zlatko Salcic, *Export Credit Insurance & Guarantees*, Palgrave Macmillan (UK), 2014, p.81

www.kci.go.kr

약(Facility Agreement)에 달리 표현될 수 있다.[31] 개별 대출계약을 포함한 금융계약(Financial Documents)이 상충하여 대주단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통금융조건계약(Common Terms Agreement)[32]을 마련한다. 공통금융조건계약의 당사자는 대주단과 프로젝트 회사이다.

공통금융조건계약은 모든 대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금융구조 및 조건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내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개별 대출계약에 대한 공통적인 규정, ② 담보계약, ③ 이자율 헷지계약, ④ 프로젝트 계약(Project Documents)[33]과의 관계, ⑤ 대주단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여기서 정해지는 내용으로 개별 계약들의 내용을 구체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해당 계약에 특수한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만일 공통금융 조건계약과 개별 계약서 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모든 대주단에게 공통의 금융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신에서 공통금융조건계약의 규정이 우선하게 된다.

2) 대출계약 (Facility Agreement)

대출계약(Facility Agreement)은 대주와 차주 간 금전대차에 관한 내용을 정한 계약으로, 대주와 차주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내용의 중심이 된다. 이 대출계약이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대상인 금융계약이다.

대출계약서는 대주와 차주 간 금전대차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주의 금전을 대출할 의무, 차주의 대출금 상환의무, 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주의 권리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기술된다. 이러한 내용은 대출금의 지급절차 및 용도, 원금 상환, 이자 및 수수료의 지급, 자금인출의 선행조

31) 예를 들어,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나 ECA로부터 직접대출을 통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대출계약서(Facility Agreement)에는 대출에 관한 내용만이 담기나,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또는 ECA로부터 보험 또는 보증을 받아 대출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험금 및 보증채무 이행 후 보험자 또는 보증인이 갖게 되는 대위권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다(배인성, 앞의 책, 314면).

32) 공통금융조건계약은 Project Coordination Agreement 또는 Co-Financing Agreement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된다(E.R. Yescombe, *Principles of Project Finance*, Academic Press (US), 2014, p.399).

33) 프로젝트 계약서(Project Documents)에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 생산물 구매계약(Off-take Agreement), 원료공급계약(Supply Agreement) 등이 존재한다(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핸드북』, 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33-35면).

www.kci.go.kr

건(Conditions Precedent), 차주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특별약속(Covenants) 조항 등으로 구체화된다.[34]

개별 대출계약서의 조건이 달라 대주 상호 간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금융조건 계약을 체결하므로, 상술한 내용의 조항은 공통금융조건 계약에도 기술되어 있다. 그렇기에 동일한 내용을 대출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므로, 대출계약서에서는 공통금융조건계약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즉 해당 대출계약에 특수한 내용만을 정한다.

3) 대주 간 계약 (Intercreditor Agreement)

신디케이트 론에 참여한 다수의 대주는 금융계약에 관한 이해관계가 달라, 차주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때 각 대주에게 발생하는 위험의 양태가 다르다.[35] 금융계약 상 문제가 발생한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대주 간 계약서(Intercreditor Agreement 또는 Deed of Intercreditor)는 향후 대주간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들의 권리 실행에 관한 내용을 정한 계약서이다. 대부분의 금융계약(Financial Documents)은 그 당사자가 대주와 프로젝트 회사, 즉 차주 사이에 체결되지만, 대주 간 계약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주 간 계약서는 대주들의 권리의 실행과 집행, 권리의 포기, 계약의 개정 등에 관한 대주들 간의 의사결정 방법 등을 다룬다. 즉, 프로젝트 계약 및 금융계약(Financial Documents) 상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포기, 담보권의 실행여부, 대출 원리금의 대주 간 상환순서, 담보권의 처분과 매각대금의 사용순서 등을 정하는 것이다.[36] 대주 간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은 다수의 대주단이 동의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대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존재한다.[37]

---

34) 한국수출입은행, 『영문국제계약해설』, 한국수출입은행, 2004, 125면.

35) 2018.4.22일 방문,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1-107-628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 김채호, 앞의 논문, 33면.

36) 최성현 · 신종신, 『국제금융관계법률』, 한국금융연수원, 2016, 349면.

37) John Dewar,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Oxford (UK), 2015, p.324.

www.kci.go.kr

4) 담보계약 (Security Agreement)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는 프로젝트 회사(차주)가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의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이다. 금융계약의 체결 전에 프로젝트의 수입 또는 원리금 상환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분석하나, 분석과 달리 프로젝트의 건설이 지연되어 예상한 시점보다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는 그 프로젝트 외 자산이 없으므로, 대주단은 차주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차주가 소유한 가능한 한 많은 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다.[38] 프로젝트 설비, 차주가 소유한 프로젝트 계좌, EPC 계약자가 프로젝트 회사에게 제출한 독립적 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담보설정은 그 담보의 소재지에 따라 프로젝트 소재지 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 담보가 프로젝트 소재지 역외에 존재하면 영국법 등을 준거법으로 하여 담보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39]

(4) 금융계약의 주요 내용

1) 인출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은 은행이 대여할 금액에 대하여 승인한 후에 차주가 필요한 만큼 인출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도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추어 인출(Drawdown)을 하도록 제한을 하고, 또한 그 기간에 관해서도 제한을 두어 프로젝트 회사가 무분별한 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차주가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인출기간(Availability Period)이라 한다. 금융계약서를 준수하여 인출기간 내에 차주가 대주에게 인출을 요청

38) 최성현 · 신종신, 앞의 책, 352면.

39) 발전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발전소를 짓기 위하여 토지가 필요하고, 그 위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하여 송전설비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발전소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보일러의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해와야 할 것이다. 이 때 담보설정이 가능한 대상물은 토지, 발전소 설비, 각종 권리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발전소의 운영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면 해당 현금이 금융기관의 계좌로 유입될 것이고, 자금의 유용 방지를 위하여 계좌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발전소의 운영 중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사업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한 상업보험으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에 대한 담보설정 등이 가능하다(최아름, "중장기성 수출보험 계약자의 금융채권 양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29면).

www.kci.go.kr

하면, 대주는 차주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상환

금융계약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에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는 금전을 차입하고 그 차입한 금전을 상환하는 것이다. 금융계약서에서는 차주가 금전을 상환하는 방법, 상환하는 기간, 그리고 차용한 금전에 대한 이자지급 및 이자계산 방법 등을 정한다. 이처럼 금융계약서에서 정해진 상환방법[40]에 따라 차주는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채무불이행

금융기관과 차주 간 금전을 차입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에서 차주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원리금의 상환기일에 그 금전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다. 차주의 원리금 미상환이 중요한 채무불이행 사유 중 하나이나, 이 외에도 차주의 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위반 시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는 차주의 의무의 예로 "환경기준 준수의무", "각종 계약서의 변경 금지의무", "대주의 동의 없는 추가 부채 설정 금지의무", "중요 자산의 매각 금지의무" 등이 존재한다.[41]

40) 국제금융시장에서 상환은 6개월 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방식(semi-annual equal principle repayment),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semi-annual equal principle and interest repayment), 불균등상환방식(sculpted payment, amortization schedule)으로 이루어져 있다.

41) 고전적으로 환경은 공법적 문제로만 여겨졌으나, 현재는 사인간의 영역에까지 환경기준 준수의무가 확장되고 있다. 영미법상에서는 담보부 채권자인 은행이 그가 대출해준 사업체가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자 책임(Lender's liability)을 지도록 하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U.S. v. Fleet Factors, Corp. 901 F.2d 1550 (11th Cir. 1990), 498 U.S. 1046(1991)). 이러한 판례의 확고한 입장과 더불어, 국제상업은행들은 사회적 책임투자라는 관점에서 환경 및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 및 감시하는 일련의 정책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을 채택하였다. 적도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한 은행은 매년 연차보고서에 적도원칙의 이행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므로, 은행이 참여한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가 환경 및 사회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한국무역보험공사, 『공적수출신용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이해』, 한국무역보험공사, 2017, 206-224면). 대출자 책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심영, "대출자책임", 「증권법연구」제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3"을 참조.

www.kci.go.kr

4) 준거법

사업 시행지국의 법률, 제도의 미비, 금융 제공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의 법률 변경의 가능성, 법 운영상의 문제점, 법원에 의한 해석방향의 불확실이나 선결례의 부족에 따른 예측불능 등으로 법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42]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계약서는 금융과 법률이 조화롭게 잘 발달한 영국법 또는 미국의 뉴욕주(이하, "미국법")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금융이 발달하여 금융에 대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금융역사는 영국에 약간 못 미치지만 영국보다 큰 규모의 금융이 발달하였으며, 그로부터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 금융기관은 준거법을 설정할 때에 대주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이 뛰어난 곳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법과 미국법은 법적 안정성과 금융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준거법으로 선호된다. 다만, 미국법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준거법으로 선호되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43]

Ⅲ. 경개를 통한 금융채권자의 변경

1. 필요성

채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채 조기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러서야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44] 그러나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정책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유한 채권 또는 금융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해야 할 경우가 발

42) 한국수출입은행, 앞의 책, 234면.

43) Anthony Morton, "New York and English law Comparison", *Norton Rose Fulbright Publication*, 2015; 다만, 이 준거법에도 예외는 존재한다. 공통금융조건계약서, 대출계약서 등 대부분의 금융계약서는 영국 또는 뉴욕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지만 담보계약서에서의 준거법은 영국법 또는 뉴욕주법이 아닐 수도 있다. 담보계약 중 담보물이 사업 시행지국에 소재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해야만 그 효력을 얻을 수 있기도 한다. 따라서 담보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지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설정한다.

44)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381면.

www.kci.go.kr

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디케이트 론에서 A은행이 차주와 금전차용에 관한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A은행이 다른 은행을 모집하여 이 대출에 참여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이 제3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권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채권양도'를 통하여 금융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계약에서 금융기관이 채권'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금을 공여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전부 이행한 이후로,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차주가 금전을 인출하기 전 또는 인출하고 있는 중에는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자금을 대출해줘야 하는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우리나라 또는 뉴욕법[45]에서는 채권의 양도 시 자신의 의무까지 동시에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법의 경우 의무(Obligation)는 채권과 함께 양도의 형태로 이전될 수 없다. 영국법에서의 채권양도는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채권만 양도되는 것이다.[46] 의무와 채권을 함께 양도하기 위해서는 경개(Novation)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47] 따라서 영국법에서의 경개는 계약의 당사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48] 금융계약의 경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영국법에서의 경개의 내용

(1) 의의

우리 민법은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를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의무도 함께 양도할 수 있다.[49] 그러나 영국법에

45) 뉴욕법상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New York Uniform Commercial Code (NYUCC) § 2-210, § 9-406과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317, § 318 참조.

46) 영국법에서의 채권양도는 법령상 양도(statutory assignment)와 형평법상 양도(equitable assignment)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령상 양도는 「Law of Property Act 1925」 Section 136(1)에 그 양도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법령에서는 의무가 권리와 함께 이전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양도의 원칙(principle) 상 의무의 이전이 금지되고 있다. 영국법 상 양도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Greg Tolhurst, *The Assignment of Contractual Rights*, Bloomsbury (UK), 2016, p.119 이하" 참조.

47) Ewan Mckendrick, *Contract Law*, Oxford (UK), 2014, p.979.

48) Michael Furmston, *The Law of Contract* 6th, LexisNexis (UK), 2017, p.1490.

49) 로마법에서는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았고,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채권 및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www.kci.go.kr

서는 채권의 양도 시 의무(obligation)를 함께 이전할 수 없다. 의무와 채권을 함께 양도하기 위해서는 경개제도(novation)를 이용해야 하므로, 영국법상에서의 경개는 계약의 당사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50]

(2) 요건

영국법 상 경개제도는 법률로써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보통법에서 인정되어 온 제도이다.[51] 영국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변경을 위한 경개계약의 경우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52]

첫째, 경개계약은 기존의 계약당사자(existing party)를 새로운 당사자(new party)로 변경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양도의 계약은 양수인과 양도인 두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라면 경개는 채무자, 양도인, 양수인 등 모든 계약 관계자가 함께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관계는 삼면관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 동의는 명시적인 문언으로 표현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를 할 경우에는 행동으로써 그 동의가 명백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계약의 방식으로 서면화(in writing)가 별도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계약에서 경개의 방식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이 동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내심의 의사의 합의가 없다면 계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것으로 보아 경개제도를 두었다 이에 반해 독일 민법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를 인정하였고 이에 배치되는 경개제도는 두지 않았는데, 우리민법은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모두를 인정하고 있어 경개제도는 극히 한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8, 313면;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8, 401면).

50) Ewan Mckendrick, *op. cit*, p.979; Michael Furmston, *op. cit.*, p.1490.

51) 영국법 상 경개(novation)에 관하여는 "Neil Andrews, *Contract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2015, § 8.12" 참조.

52) *The Tychy* (No 2) [2001] 1 Lloyd's Rep10. 24.

www.kci.go.kr

(3) 경개의 효과

경계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당사자인 양수인과 기존의 채무자, 곧 신 채무자 간에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다.[53] 기존 계약의 당사자 중 한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당사자로 하여금 기존 계약 당사자 중 한 당사자와의 계약관계를 형성시키고, 새로운 계약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된다.[54]

즉, 기존의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되므로, 구 계약은 소멸되고 경개계약에 따른 새로운 계약이 존재하게 된다.[55]

3. 금융계약의 경개와 보험목적 양도의 효력

금융기관이 경개를 통하여 금융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중장기성 보험목적의 이전을 추구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반적인 양도요건을 살펴보고, 금융계약의 경개가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력을 갖는지를 살펴본다.

(1) 보험목적의 양도 요건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1) 보험자인 K-SURE의 사전 서면승인이 있어야 하고, 2)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어야 하고, 3) 보험목적의 양수인은 그 양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자의 사전 서면승인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보험의 목적 양도에 관하여 약관 제18조에 달리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 양도에 따른 상법상 보험계약 승계추정의 제도(상법 제679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금융계약의 당사

53) Ewan Mckendrick, *op. cit.*, p.978.
54) Ewan Mckendrick, *Ibid*, p.979; Neil Andrews, *op. cit.*, p.214.
55) Neil Andrews, *Ibid*, p.214.

www.kci.go.kr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약관 제18조 1항). 계약서에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의 준거법에 따라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중장기성 수출보험에 부보 된 금융계약은 채권의 양도로 금융계약의 당사자가 변동되는 것이 보험계약의 중대한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금융계약에 대하여 노하우가 많지 않은 금융기관이 금융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프로젝트의 위험징후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보험사고를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금융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기 전에 공사에게 그 변경에 대한 통지[56]를 하고, 공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융계약 양도의 승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금융채권 양도 요건의 준수

금융기관이 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발생이 된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여야 채권이 제3자에게 유효하게 이전된다.[57]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은 금융계약으로, 금융계약의 채권자이자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58]

만일 채권양도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금융기관이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중장기성 수출보험 약관 제7조는 보험자의 면책사항을 규정하는데, 동조 1항 2호 다목은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계약이 해당국의 법률을

56) 보험계약자의 통지의 방식에 대하여 약관에서 달리 정하여진 바는 없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양도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해 사전의 승인 신청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점,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에 대하여 홈페이지 상 그 서식을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양도에 대하여도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57) 안상진, "채권양도의 준거법에 관한 소고", 「국제사법연구」 제9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3, 189-190면.

58) 채권양도의 요건 중 일부를 흠결한 채 양도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금융계약은 여러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대주와 차주 모두를 위하거나 또는 대주를 위한 법률자문사가 함께 업무를 진행한다. 국제적인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률자문사는 금융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영국계 또는 미국계 로펌일 가능성이 높고, 채권의 양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사의 검토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법령 상 필요로 하는 양도의 요건을 흠결한 채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위반하게 하거나 그 법적 효력을 상실케 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양도사실의 통지

중장기성 수출보험 약관 제18조 2항은 보험계약자는 금융계약 등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입하면, 채권의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59]는 양도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60]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의무가 존재하는 까닭은 보험계약자가 A 금융기관에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보험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자는 그 채권이 실제로 A 금융기관에 이전이 되었는지 B 금융기관에게 이전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보험목적의 양도절차를 준수한 경개의 효과

1) 보험목적의 동일성 여부

경개에 의한 채권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계약관계는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관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에 부수했던 각종 담보권은 전부 소멸하게 되고, 새로운 계약관계에 대하여 각종 담보권을 재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실무적인 절차이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담보권의 순위가 기존의 순위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 번거로움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만한 일이다.

그러나 차주가 A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에게 1순위의 담보권을 제

59)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보험계약의 체결 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금융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고 난 이후의 보험계약자는 금융계약의 양수인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수인이 피보험자 등으로 보험관계에 진입하였다면, 보험목적의 양도를 통보하는 자가 금융계약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될 것이다.

60) 이 때 통지와 함께 그 변경내용을 요약한 것과, 채권자 변경에 따른 관련 계약서 일체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채권자 변경에 따른 관련 계약서 일체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에 부수하여 실무적으로 발생한 담보계약서 상 담보자가 변경된 계약서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법률자문사의 최종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최아름, 앞의 논문(각주 39), 175면).

www.kci.go.kr

공하였고, 그 이후 B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A은행에게 제공한 담보를 B은행에게 제공하였다면 B은행은 2순위 담보권자가 된다. 이 때 차주와 A은행 간에 체결한 대출계약을 경개의 방법으로 C은행에게 양도한다면, C은행은 A은행이 보유하였던 1순위의 담보권이 아니라, B은행보다 후순위의 담보권을 제공받게 된다.

경개로 인하여 구계약에 설정된 담보의 내용과 신계약에 설정된 담보의 내용이 변경되어 금융계약의 동일성은 부인된다고 보인다.

3) 피보험이익의 동일성 여부

중장기성 수출보험 부보 부 금융계약에서 경개에 의한 채권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 동일한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면 중장기성 수출보험에서 금융계약의 경개를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개계약은 구계약과 신계약으로 양 계약사이의 관계가 절단되기 때문에 보험목적의 실질적 유사성은 존재하더라도 형식적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과 신계약이 중장기성 수출보험에 부보 된 경우의 피보험이익이 동일할 경우에 보험목적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에서의 보험의 목적은 금융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주와 대주는 변동된 바 없고 기존의 금융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담보권의 설정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고, 금융계약서는 동일하지만 금융계약서에서 정한 기본전제이었던 상황들이 변하여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개에 의해 채권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가지게 될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동일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즉, 금융계약의 경개 전 보다 금융계약의 경개 후 담보이익이 저하되어, 경개 전 발생 가능한 보험사고의 금액이 50이었으나 경개 후 발생가능한 보험사고의 금액이 100이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3) 소결

경개에 의한 채권자의 변경은 기존의 금융계약과 새로운 금융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경개 전의 금융계약과 경개를 통한 새로운 금융계약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개에 따른 담보권의 변화 및 해당 프로젝트 사업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행정절차의 집행에 따라 금융계약 상 위험이 달라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금융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경개계약을 활용할 경우,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구 금융계약의 소멸로 피보험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효력 또한 소멸된다.

Ⅳ. 중장기성 수출보험에서 금융계약의 경개 인정 가능성

1. 개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융계약에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인출의무를 전부 이행하기 전에 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당사자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보험자가 금융기관이 타인에게 채권과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목적의 경개계약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상품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우리 기업의 수출 또는 투자기회를 놓치는 길일 수 있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이 경개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다면, 이전의 금융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 또한 상실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보험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증진 및 외화투자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적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중장기성 수출보험이 공보험적인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수출자의 외화가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개에 의한 채권자의 변경을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으로 논의하여야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금융계약에서 금융기관의 주된 의무가 차주에게 금전을 대차하여 주는 것임에 착안하여, 경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금융계약의 인출 시점, 즉 금융 시점에 따라 그 가능성을 검토한 후, 그 외에도 금융계약의 경개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2. 금융 시점 별 경개 인정가능성 검토

(1) 금융계약의 인출 전

차주와 대주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금융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차주가 대주로부터 곧바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주와 차주 간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금융계약은 대주가 차주에게 얼마큼의 금전을 공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주가 이 금전을 이용하기 전에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하기도 한다. 그 의무의 내용은 "차주가 자신의 정관을 제출할 것, 이사회 회의록 등 계약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출할 것,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허가권을 취득할 것, 담보를 대주에게 제공할 것, 환경의무를 준수할 것, 프로젝트 관련하여 제반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법률자문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 기술자문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 등이 있다. 이처럼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물리적으로 공여하기 전에 차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이라 부른다.[61] 이는 우리 법제에서의 '정지조건(停止條件)'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출선행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차주는 대주에게 금융계약에 따른 자금인출을 요청할 수가 없다.

인출선행조건의 특징을 염두에 둔다면, 금융기관이 경개를 통하여 중장기성 수출보험에 부친 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때 보험자가 이 경개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때는 금융계약의 인출 전이다. 그 이유는 금융계약에 부수하여야 할 담보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체결 기초가 된 위험에 대하여 보험자가 가지는 가치판단이 가장 중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62] 또한 담보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61) 인출선행조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의 책(각주 33), 115-116면 참조.
62) 프로젝트의 산업별 특성에 따라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위험 시점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발전플랜트를 예로 들면,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는 동안 그 위험이 가장

www.kci.go.kr

것은, 경개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담보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대주단이 담보에 대하여 가지는 순위는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주가 금융계약 상 금전을 인출하기 전, 특히 담보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면 보험자가 금융계약의 경개를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자 대위로서 취득하게 되는 각종 담보권들에 대하여 실효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금융계약의 인출 후 - 인출 종료

금융계약의 인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많은 인출선행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최초 인출 시에만 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인출선행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계약은 차기 인출 시에도 차주로 하여금 각종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차기 인출을 위한 조건(Conditions Subsequen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최초 인출 시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담보권을 제공하지 못하면 추가 인출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에서 금융계약의 경개가 문제되는 것은, 피보험이익 상실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금융계약의 경개가 각종 담보권의 실효적인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기에 금융계약의 인출이 시작되었더라도 차주가 대주에게 담보권을 제공하기 이전이라면, 금융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담보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담보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그 금융계약의 경개를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금융계약의 인출종료 이후

금융계약 상 인출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대주가 차주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만큼의 금전을 차주가 전부 인출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차주는 그 금전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대주가 차주에게 자금을 공여하여야 할 의

높고, 발전소가 완공되어 상업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발전시장의 경우 전력을 구매하는 자가 공공의 구매자인 경우가 많고, 특수목적회사가 공급하는 전력에 대하여 kWh 당 고정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원리금의 회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무가 종료됨을 의미한다.

대주가 차주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금융계약의 인출이 종료된 이후에 대주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경개의 방법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이전해야 할 것이다.

3. 그 외 경개 인정가능성 검토

앞서 검토한 금융계약의 경개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출시점에서는 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하였다. 담보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금융계약의 경개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담보계약이 체결된다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후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의 내용이 침해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경개를 인정할 실익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인 금융계약은 그 기간이 장기간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담보가 설정되었고, 인출기간 중에 금융계약의 경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융계약에 부수된 담보권이 그대로 존속하거나, 존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주가 대주에게 기존에 제공한 담보와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 보다 큰 담보를 새로이 제공한다면 보험자 측에서는 경개계약을 보험의 목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실익이 존재할 것이다.

경개계약의 체결 전 차주가 대주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① 차주가 대주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주단 외 제3자가 담보권자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② 사업지 수행국의 재무부 등이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자가 경개계약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 내용을 승인하였는지 여부
③ 금융계약의 경개 시 담보권 이전에 관한 법률적 검토

첫 번째의 경우는 대주단 외 제3자가 담보권자가 없다면 금융계약의 경개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 다만, 제3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금융계약의 경개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금융계약의 경개 전과 동순위의 담보권을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

www.kci.go.kr

이 존재한다. 만일 동순위의 담보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차주에게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특수목적회사가 해당 프로젝트만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대주단이 아닌 제3자가 담보권자로 설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업수행지 국의 재무부 등이 특수목적회사에 프로젝트를 위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의 효력이 완전해야 할 것이다.[63] 경개계약은 구 계약과 신 계약이 절단됨에 따라 보증계약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금융계약의 경개 전에 지급보증인으로부터 그 경개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경개 후 계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담보권 손실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금융계약의 경개가 있다 하더라도 담보권이 존속한다는 것은 금융계약에 부수한 담보계약에 대해서도 새로이 체결하거나, 담보계약의 준거법에서 해당 금융계약의 경개에도 불구하고 담보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보계약이 새로 체결되었거나, 금융계약의 경개에도 불구하고 담보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대주단은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법률자문사에게 그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고 그 의견을 징구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개와 담보계약의 변경이 진행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보험사고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Ⅴ. 마무리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우리 기업의 자본재 수출과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이로 하여금 우리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향상, 외화가득, 사업에 대한 경험 축적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이 활성화는 국익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 중장기성 수출보험이 금융시장에서 상품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된다면 국익제고에 대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나

63) 이 때의 보증은 MDB 또는 ECA가 금융제공의 수단으로 제공한 보증을 제외한다.

www.kci.go.kr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중장기성 수출보험이 상품성을 띄어야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성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금융계약의 경개와 중장기성 수출보험이 그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성에만 치중하여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보험자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믿었는데,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지 못하여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알게 된다면 보험계약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상업적인 상품성 그리고 안정성을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보험자는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인 금융계약의 경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먼저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가 경개를 통하여 금융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보험자가 인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보험자가 충분히 실효적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금융계약의 경개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융계약이 획일화된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금융계약의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도 실제 금융계약의 경개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리적 검토가 면밀히 선행되어야,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를 모두 보호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보험자의 기금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단행본>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8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2016

배인성,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범서북스, 2014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8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7

이기수 · 최병규 · 김인현, 『보험 · 해상법』, 박영사, 2015

정찬형, 『상법강의 하』, 박영사, 2017

최성현 · 신종신, 『국제금융관계법률』, 한국금융연수원, 2016

한국무역보험공사, 『2016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한국무역보험공사, 2016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적수출신용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이해』, 한국무역보험공사, 2017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제도안내 02』, 한국무역보험공사, 2016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핸드북』, 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한국수출입은행, 『영문국제계약해설』, 한국수출입은행, 2004

Ewan Mckendrick, *Contract Law*, Oxford (UK), 2014

E.R. Yescombe, *Principles of Project Finance*, Academic Press (US), 2014

Greg Tolhurst, The Assignment of Contractual Rights, Bloomsbury (UK), 2016

John Dewar,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Oxford (UK), 2015

Michael Furmston, *The Law of Contract* 6th, LexisNexis (UK), 2017

Neil Andrews, *Contract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2015

www.kci.go.kr

Zlatko Salcic, Export Credit Insurance & Guarantees, Palgrave Macmillan (UK), 2014

<연구논문>

김채호,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 분석 및 경감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24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

원준연, “중장기수출금융 지원 사례 - 싱가포르 Jurong Aromatics 프로젝트 -”, 「무역보험」 171호, 한국무역보험공사, 2012

김수환, “터키 최초 민간 주도의 갈탄화력발전소”, 「무역보험」 174호, 한국무역보험공사, 2012

심 영, “대출자책임”, 「증권법연구」제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3

안상진, “채권양도의 준거법에 관한 소고”, 「국제사법연구」 제9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3

최아름, “수출신용보험 청구권 양도와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능성에 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최아름, “중장기성 수출보험 계약자의 금융채권 양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통계”, 「무역보험」 제207권, 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한 민, “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Anthony Morton, “New York and English law Comparison”, Norton Rose Fulbright Publication, 2015

<보도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무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사업에 U$1.41억 수출금융 지원 추경 예산 활용…신흥시장 해외프로젝트 진출 돕는다”, 보도자료, 2016.11.8

<홈페이지>

Thomsonreuters,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s://www.ksure.or.kr

www.kci.go.kr

〈Abstract〉

Legal Effects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fter a Novation of the Facility Agreement

Choi, Areum

The Facility Agreement is the subject matter insured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nd policyholder(s) is a bank(s). Because of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the bank may have to transfer their own rights of the Facility Agreement to a third party. In the case of the Facility Agreement governed by the English Law, the obligations cannot b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in the manner of assignment; only a novation can be used for the transfer of it.

Once the Facility Agreement is novated, in addition to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Facility Agreement, the legal effects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contract change. Since the identity of the new contract is not recognized as the original one,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will be invalid due to the loss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If the insurer accepts the novation of the Facility Agreement without any condition, the insurer may face difficulties in effectively exercising subrogation right, such as the loss of security interests.

If the insurer does not permit the policyholders to use novation to transfer their rights to the third party, the marketability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n the financial market will be hindered. However, if it is recognized indiscriminately, it can lead to legal conflicts. Therefore, both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can lead to contradictory results, affecting the merit of the product. If the policyholder believes that the risk for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 is not maintained and the risk of the insurance contract becomes known after the accident, the policyholder will suffer economic loss. Considering both the commercial viability and the stability of the Medium and

www.kci.go.kr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insurer can permit the novation and if so, how. First, in terms of stability, except for special cases, the insurer should not allow the policyholder to novate the Facility Agreement to the third party. However, if the insurer has sufficient conditions to exercise suitable effective insurer rights, it may be possible to allow the novation in the restricted situation.

Key Words : project finance, novation, facility agreement, export credit insurance, export finance

www.kci.go.kr